

제424회 임시회

' 25. 3. 13.(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 및 자격 규정(안 제5조)
-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시간 및 활동 기준 규정(안 제6조)
- 일하는 밥퍼 사업 봉사활동실비 지급 규정(안 제7조)
-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 비용 지원 규정(안 제9조)
- 사무의 위탁 및 협약 규정(안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가·소상공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일거리를 담당하는 인력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일하는 밥퍼 사업:**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충북은 이미 2023년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이에 대응한 선제적 노인정책의 발굴이 요구됨.
 - 또한 독거노인과 노인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이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노인인구(충북) : 347,501명(고령화 21.8%→충북 '23.2월, 전국 '24.12월 초고령사회진입) / (독거노인) 110,723명(31%)
 - 고독사(충북) : 167명(전국 3,661명, 60대 이상 50.3%) ← '19년 70명 대비 **239% 증가(전국 124%증가)**
-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필요성 및 당사자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고,
 - 도 내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로 생산인구는 점차 감소로 하고 있음.
 - 노인 사회참여 제한요인 :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연령주의와 편견, 기술적인 격차
-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 도 내 농가·소상공인·기업 등(이하 “농가 등”이라 함)에서 일손이 부족해 버려지거나 기계화가 어려운 간단한 소일거리(농산물 다듬기, 간단한 공산품 작업 등)를 봉사활동 개념으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울증 해소 및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 또한 일손부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소상공인·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실체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제5조	참여 대상 등
	제6조	참여 시간 등
	제7조	봉사활동실비 지급
	제8조	참여자 활동 관리
	제9조	비용 지원 등
보칙규정	제10조	사무의 위탁 및 협약
	제11조	포상 등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일하는 밥퍼 사업”, “노인”, “사회참여 취약계층”, “농가”, “소상공인”, “기업”, “경로당”, “단체작업장”, “기타작업장”, “봉사활동실비”, “자원봉사”의 뜻을 정의하였음.
- 안 제2조제2호에서 “노인”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함.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제한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규정 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존중하여 가능한 정의가 같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현재 국가 복지사업에서 대상노인의 연령을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두고는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노인”에 대한 별도의 연령 기준이 없음.
 -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 따른 일하는 밥퍼 사업과 유사한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 안 제3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체계적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군수·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조치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참여 봉사자와 일감 제공자의 범위 및 참여자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한 도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참여 봉사자: 60세 이상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
 - 일감 제공자: 농가, 소상공인, 기업,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안 제7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1항에서는 봉사활동실비를 기타작업장(개인적으로 참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개인에게 지급하되, 단체작업장(경로당 단위로 참여)의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 제2항에서는 봉사활동실비를 현금 외에 지역화폐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지급되는 봉사활동실비가 해당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에서는 봉사활동실비, 수행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홍보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봉사활동실비의 회수 및 부정수급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 및 발생 시 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에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 제2항에서는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여자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특히 제2항의 경우, '우수 참여자'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식적인 예산 집행 절차를 따른 지원임을 의미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 격려물품 지원에 있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지원물품의 가액과 종류의 적절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가·소상공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일거리를 담당하는 인력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봉사활동실비의 부정수급 문제, 또는 기존 저소득층 도민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담당하던 일거리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거리와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